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46호

제출년월일 : ２０２２년 6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 주민자치회 전 동(洞)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주민자치협의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다.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구성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40이하는 동 소재 주요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여 간사를 두되,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자치회장이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발생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회의를 병행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주민총회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차.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회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카.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하되,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 마련은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하도록 함.(안 제36조)

타.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되,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9조)

파.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5조)

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지방자치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공직선거법」 제19조, 제6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4. 21. ~ 2022. 5.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주민자치학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

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및 제23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闕位)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인 사람
4.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는 해산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위원 선정절차) ① 선정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 중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40대 이하의 경우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공개추첨 및 추천에 따른 유형별로 각각 10명 내외의 예비자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이수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공개추첨 및 추천 등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자 선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9조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4.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후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수
5.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참여
6. 공익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비리 등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통해 자치회장이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10명 이내 동 주민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출석·발언권이 있으나, 표결

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과 동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개최 횟수 또는 개최 주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사항
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업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 그리고 구와 동의 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주민총회의 정족수 등 주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4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에 대한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주민자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 선임한다.

제29조(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제3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회관

제33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ㅇㅇ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도서방,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건물의 임차,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시상 할 수 있다.

제37조(지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품발표회(경진대회) 및 작품전시회
2. 주민자치회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 특화 사업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제3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40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41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및 협조

제45조(주민자치회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해당 요청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

에 가입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회관의 운영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자치회관 사용료(제39조제3항 관련)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다목적홀	1회	20,000원 이하	1. 1회 사용기준 3시간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3.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당 20% 가산
강의실 등	1시간	5,000원 이하	

※ 구·동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 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치회관 수강료(제39조제3항 관련)

구 분	대상	수강료	비 고
기본·초급 프로그램	일반주민	월20,000원 이하	1. 월 20시간 이하 기준 (월 20시간 초과 시 기준액의 50%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2. 대상기준 - 청소년이란 중학생 이상 ~ 만19세 미만 - 초등학생 이하란 초등학생 포함 미취학 아동 3. 재료비는 본인 부담
중급·고급 프로그램	일반주민	월25,000원 이하	
전체 프로그램	청소년 및 초등학생 이하	월15,000원 이하	

[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9조제5항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사용료 및 수강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단체	구·동 관련 활동 및 공공의 비영리 목적인 단체 등	
수강료	노년층	수강생 전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에 한함	100%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이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 략)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 략)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 7.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 9. (생 략)

② (생 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③ ~ ⑤ (생 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 12.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2746호

제안연월일 : 2022년 6월17일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2022년.6.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6.3. 당 위원회로 회부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 각 호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회관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한다.

○ 제3장(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35조제1항의 “의 심의를”을 “와 협의를”로 하고
제35조제2항의 “의 심의를”을 “와 협의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회관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자치협의회”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4장 자치회관”을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35조)제1항 중 “제3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36조)제3항 중 “제39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37조)제3호 중 “제34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44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30조”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와 협의”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4장 지원 및 협조”를 삽입한다.

제5장의 제목 “지원 및 협조”를 “보칙”으로 한다.

제5장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4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 자치회관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	제3장 자치회관
제24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에 대한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삭 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자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회장·부회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회장은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 선임한다.	<삭 제>	
제29조(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삭 제>	
제3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삭 제>	

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자치회관	<삭 제>
제33조·제34조 (생 략)	제24조·제25조 (현행 제33조 및 제34조와 같음)
제3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 수 있도록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제25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운영) ①·② (생 략)	제2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30조제2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지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 특화사업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3. 제25조제2항----------
제38조 ~ 제43조 (생 략)	제29조 ~ 제34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
제4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① ---------- 주민자치회와 협의----------.

② 동장은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30조---------- ---------- ---------- ---------- 주민자치회와 협의---------- ---------- ----------.
제5장 지원 및 협조	<삭 제>
<신 설>	제4장 지원 및 협조
제45조·제46조 (생 략)	제36조·제37조 (현행 제45조 및 제46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47조 ~ 제49조 (생 략)	제38조 ~ 제40조 (현행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와 같음)